

의안번호	2109329
의 퇴 인	박 정 의원
회 답 일	2021. 4.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가중(안 제 17조제2항)
 -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II.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가해학생에 대해 각종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가해학생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지원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현재 각종 조치 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시·도교육청이 이를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을 지원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가해학생(이하 “대상학생”이라 한다) 수와 이들에 대한 조치 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받은 경우 및 이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지원확대규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 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2}^{2026} [\text{대상학생 수}_t \times \text{특별교육 심리치료를 병과받는 비율}_t \times \text{교육청 지원비용단가}_t]$

□ 그러나 현재 개정안에 따른 병과·가중 대상학생 수, 이들에 대한 병과 조치 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 및 이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지원확대규모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추계가 곤란함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조치 건수는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가해학생에 대한 유형별 조치건수

(단위: 건수)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제1호	14,370	18,238	20,366	20,938	2,755
제2호	9,218	12,193	13,644	14,996	3,150
제3호	7,590	9,900	10,235	9,648	1,831
제4호	2,865	3,815	3,734	3,494	443
제5호	9,640	11,663	11,780	13,111	739
제6호	3,591	4,729	5,213	5,300	967
제7호	751	977	1,038	1,101	116
제8호	1,752	1,959	2,073	2,127	303
제9호	156	133	152	168	22

주: 1. 중복건수 포함

2.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

자료: 교육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과장	이진우
추계세제분석관	박나경
연락처	02-6788-4627
	nkpark@assembly.go.kr
